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1. 심판수당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연구경력 3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월 400,000원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월 25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월 20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월 100,000원 (비고)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 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 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심판업무수당	심판 및 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중 사서, 방호, 교환을 제외한 각 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5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3. 민원업무수당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월 70,000원 이하
4. 사서수당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5. 기술정보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나)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2) 전산업무(자료입력업	지급대상 중 전산직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6. 연구업무수당	1)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2)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 연구교수부장, 교육팀장 및 교수		월 110,000원																		
7. 전문직위수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3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내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지급상한액 <table><tr><th>근무기간</th><th>4급 이상</th><th>5급 이하</th></tr><tr><td>1년미만</td><td>100,000원</td><td>70,000원</td></tr><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20,000원</td><td>90,000원</td></tr><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80,000원</td><td>150,000원</td></tr><tr><td>3년이상 5년미만</td><td>300,000원</td><td>250,000원</td></tr><tr><td>5년이상</td><td>450,000원</td><td>400,000원</td></tr></table> (비 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무기간	4급 이상	5급 이하	1년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300,000원	250,000원	5년이상	450,000원	400,000원
근무기간	4급 이상	5급 이하																			
1년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300,000원	250,000원																			
5년이상	450,000원	400,000원																			
8.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국민편익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해당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	월 20만원																		
9. 삭제 <2025. 4. 18.>																					